



# 스페셜올림픽코리아 국제위원회 규정

제정 2016. 09. 29.

## 제1장 총 칙

**제1조(설치근거 및 명칭)** 사단법인스페셜올림픽코리아(이하 "본회"라 한다.) 정관 제 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제위원회(이하 "위원회")를 설치·운영한다.

**제2조(목적)** 이 규정은 국제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스포츠 교류를 효율적, 능률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3조(기능)** 위원회는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·심의한다.

1. 국제스포츠교류의 기본계획 및 중·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
2. 국제종합대회(SOI, INAS, SOEA 등)의 참가에 관한 사항
3. 국제종합대회(SOI, INAS, SOEA 등) 유치 관련 제반 사항
4. SOI, INAS 등 국제스포츠기구와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
5. SOI 및 INAS의 국가별 단체 등 스포츠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
6. 가맹단체의 국제 전문 인력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
7. 기타 발달장애인스포츠의 국제 교류에 관련 사항

### 제4조(구성)

①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1. 위원장 1인
2. 부위원장 2인
3. 위원 15인 이내(위원장, 부위원장 포함)

②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, 회장이 본회 직원 중에서 지명 한다.

### 제5조(위원의 위촉)

-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.
- ②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회장이 위촉한다.
- ③ 위원은 당해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.



**제6조(위원의 직무)**

-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.
-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, 회장이 지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.

**제7조(임기)**

-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단,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본 회 정기총회까지로 한다.
- ②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**제8조(위원의 해촉)**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 할 수 있다.

- 1.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
- 2. 위원이 질병, 해외출장,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- 3. 실정법 위반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**제9조(회의 소집)**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.

**제10조(의결정족수)** 위원회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11조(수당 등의 지급)** 외부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,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**제12조(소위원회 운영)** 위원회는 제3조의 규정된 기능을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(비상설)를 둘 수 있다.

**제13조(사무처리)** 위원회의 사무처리는 본회 해당부서에서 담당한다.

**제14조(긴급한 업무처리)**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 위원회 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.

**제15조(제척 및 회피)** 위원은 본인, 또는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·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

**제16조(준용)**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회 정관 및 그 밖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.

**부 칙 (2016.09.29.)**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